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(앞쪽)

1. 기본사항

① 법인명	(사)한국국제경제법학회	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	209-82-08226
③ 대표자 성명	이재민	④ 기부단체 구분	민법상 비영리법인기관
⑤ 전자우편주소	ksiel@daum.net	⑥ 사업연도	2020
⑦ 전화번호	010-6514-6363	⑧ 기부금단체 지정일	2013.12.31. (재지정:2019.9.30.)
⑨ 소재지	(08826)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,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72-603(신림동)		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
(단위: 원)

⑩ 월별	⑪ 수입	⑫ 지출	⑬ 잔액	월별	수입	지출	잔액
전기이월	-	-		8월	0	0	0
1월	0	0	0	9월	0	0	0
2월	0	0	0	10월	0	0	0
3월	0	0	0	11월	0	0	0
4월	0	0	0	12월	3,300,000	3,300,000	0
5월	0	0	0	합계	3,300,000	3,300,000	0
6월	0	0	0	차기이월	-	-	
7월	0	0	0				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(단위: 원)

⑭ 지출월	⑮ 지급목적	⑯ 지급건수	⑰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⑱ 금액
12월	학술지 발간	1	글뱅크	1,538,000
12월	학술지 투고 논문심사비	23	박언경 외 22명	667,000
12월	운영비	1	이선영	1,095,000
⑲ 연도별	⑳ 지급목적	㉑ 수혜인원	㉒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㉓ 금액
2021년	학술지 발간	1	글뱅크 외	1,538,000
	학술지 투고 논문심사비	23	박언경 외 22명	667,000
	운영비	1	이선영	1,095,000
합 계		25		3,300,000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(단위: 원)

⑳ 지출월	㉑ 국가명	㉒ 지급목적	㉓ 지급건수	㉔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㉕ 금액
㉖ 연도별	㉗ 국가명	㉘ 지급목적	㉙ 수혜인원	㉚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㉛ 금액
합 계					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2022 년 3 월 30 일

제출인:

(사)한국국제경제법학회



작성 방법

1. 기본사항 : ① ~ ⑨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, ④ 기부단체 구분은 전문모금기관, 한국학교, 민법상 비영리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공공기관등,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
-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(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(1월~12월) 법인 예시)
-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.
-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.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- 국내사업 관련 ○○지원사업(장학금지급 등), 일반관리비, 기금조성비(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), 그 밖의 비용(구체적인 내용 기재) 등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⑰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⑱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- ㉑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. 예시)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.

※ 예시(장학금 지급: 10명에게 10만원씩 1월, 2월에 각각 지급, 복지단체 지원: A 복지단체에 2월에 1,000만원, 1회 지원(수혜인원 50명))

지출월	지급목적	지급건수	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금액
1월	장학금 지급	10	김우수 외	1,000,000
2월	장학금 지급	10	김우수 외	1,000,000
2월	복지단체 지원	1	A복지단체	10,000,000
⋮	⋮	⋮	⋮	⋮
연간	지급목적	수혜인원	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	금액
2013년	장학금 지급	10	김우수 외	2,000,000
	복지단체 지원	50	A복지단체	10,000,000
합 계		63		12,000,000

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-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,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,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-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
- ㉒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,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국가명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